



특허청

# 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8. 21.(일) 12:00	배포 일시	2022. 8. 19.(금) 14:30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부정경쟁조사팀	책임자	과장 양인수 (042-481-8438)
		담당자	사무관 안문환 (042-481-5528)

## 특허청, 간편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

-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실시 -

-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\*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.
  - \* 별도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·가공·포장된 완전 또는 반조리 형태의 식품
-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·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·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,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.
-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, ▲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▲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▲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▲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으로 나타나,
  -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, 등록 거절된 제품 및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  - 적발된 제품으로는 ▲콜라겐 라면 121건 ▲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▲대용량 재첩국 83건 ▲제주콩 생нат또 49건 ▲기타 87건 순으로,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.

< 간편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예시 >

		
<p>△ 권리가 소멸된 권리표시</p>	<p>△ 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</p>	<p>△ 지재권 명칭 오기 (디자인→특허)</p>

□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,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,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·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하였다.

○ 또한,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별로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 ([www.ip-navi.or.kr](http://www.ip-navi.or.kr))을 통해 제공하여, 특허·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“국민의 건강·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,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” 라고 밝혔다.



**붙임**

**올바른 지재권 정보의 표시('22. 6월 기준)**

**올바른 표시 제품(특허)**



온라인 광고페이지에 특허등록증, 제품홍보글, 제품사진을 같이 게시함

**올바른 표시 제품(상표)**



온라인 광고페이지에 상표등록증, 제품사진을 같이 게시함